

『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김정곤, 김상조, 안장환, 윤종호, 정근수(5인)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정 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미래를 선도해나갈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탄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·법인·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
- 구미시 탄소산업육성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)
-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·기업·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「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구미시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,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,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